

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전화번호		
	등록 아동등과의 관계			
		[] 본인	[] 법정대리인	
등록 아동등 정보	성 명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	
폐기 신청 사유				
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3제2항제2호 및 「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아동등에 대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경 찰 청 장 귀하

첨부서류	보호시설 설치 신고증,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이 신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2. 해당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및 「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